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50

발의연월일: 2022. 7. 20.

발 의 자:황운하·강민정·김병기

김승원 · 김용민 · 김한규

유정주 • 윤영덕 • 이수진

장경태 · 주철현 · 한준호

홍정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 하여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'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'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차도에는 「도로교통법」상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도통행할 수 있으며,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'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'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'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' 대상을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13).

법률 제 호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"를 "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차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| 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|
|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<u>자</u> |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|
| 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|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2 |
| <u>한다)</u> 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 | <u>조제1호에 따른 차</u> |
| 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 | |
| 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| |
|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 | |
| 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| |
| 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| |
|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 | |
| 한다. 이하 같다)에게 「교통사 | |
| 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1항의 | |
|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| |
|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| |
| 다. | |
| | <u>.</u> |
| 1.・2. (생 략) | 1.・2. (현행과 같음) |